

보도시점 2026. 8. 5.(수) 12:00 / 배포 2026. 8. 5.(수) 08:30  
< 8. 6.(목) 조간 >

## ‘청년피자’ 가맹본부의 가격구속 행위 등 제재

-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행위,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정보 공개서 제공과 관련한 법정 사항을 미준수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1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입하는 경우

### < 가격구속 행위 >

(주)비에스비푸드(이하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경부터 가맹계약서 작성 시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하여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 사항을 포함하였다. 해당 특약 내용은 처음의 배달팁 0원에서 기본거리 (1.5km) 0원 및 100미터 당 100원 추가 등으로 변경되면서 2025년 1월 까지 유지되었다.

\*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한 배달 주문 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달비

비에스비푸드는 설정된 배달팁 0원 특약을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사업자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서상의 근거 조항을 제시하면서 계약해지, 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이러한 배달팁 0원 특약 설정 및 강제 행위에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부합하지 않았고 가맹점사업자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 과중한 위약금 부과 행위 >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부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근거를 가맹계약서에 마련하면서 그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고 실제로 부과하였다.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의 규모는 해당 사유별로 2018년 1천만 원, 2020년 2천만 원, 2021년 5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 등 총 26회에 걸쳐 11억 1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다. 위약금의 부과를 통보한 후 미납하면 물품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제하였다.

비에스비푸드가 통지한 위약금 및 납입 위약금은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금액 및 이로 인한 비에스비푸드의 영업이익의 손실 규모에 비해 과중한 규모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의 위반 건당 자점매입 규모는 5,100원 ~ 114,000원에 불과한데 실제 납입된 위약금의 규모는 3백만 원 ~ 2천만 원에 달한다.

### < 정보공개서 제공관련 위반행위 >

비에스비푸드는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에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사업자가 배달 플랫폼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임을 입증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근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할 때 원인이 되는 계약위반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위약금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면 위반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주)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       |                    |     |     |                    |
|-------|--------------------|-----|-----|--------------------|
| 담당 부서 | 가맹유통심의관<br>가맹거래조사과 | 책임자 | 과 장 | 이득규 (044-200-5102)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주영 (044-200-5104) |

1

법 위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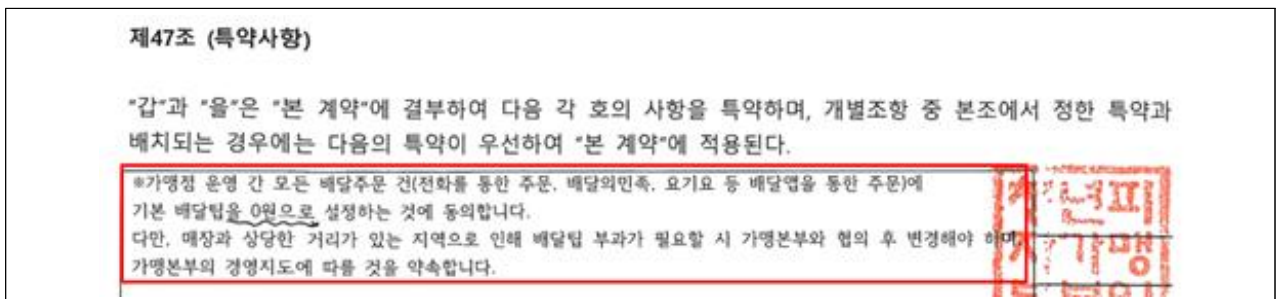
< 가격구속 행위 >

가. 행위사실

-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 경부터 총 445개 가맹점사업자와 신규 및 양수도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였다. 해당 특약 내용은 처음의 배달팁 0원에서 기본거리(1.5km) 0원 및 100미터 당 100원 추가 등으로 변경되면서 2025년 1월까지 유지되었다.

<그림>

2021. 3월 설정한 배달팁 관련 특약내용



- 또한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사업자별 배달팁 설정 현황을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가맹계약서상의 근거 조항을 제시하면서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등 배달팁 0원 특약의 준수를 강제하였다.

나.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 법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공정위는 비에스비푸드의 위와 같은 배달팁 0원 특약 설정 및 강제행위가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부합하지 않았고, 가맹점사업자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과중한 위약금 부과 행위 〉

### 가. 행위사실

-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 경부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근거를 가맹계약서에 마련하면서 그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고 실제로 부과하였다.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의 규모는 해당 사유별로 2018년 1천만 원, 2020년 2천만 원, 2021년 5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 등 총 26회에 걸쳐 총 11억 1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물품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제하였다. 이에 따라 약 1억 2천만 원을 실제로 납부받았다.

### 나.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법령은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공정위는 비에스비푸드가 납부를 통지하고 실제 납부받은 위약금을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금액 및 이로 인한 비에스비푸드의 영업이익 손실 규모에 비해 과중한 규모라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규모는 5,100원 ~ 114,000원에 불과한데 실제 납입된 위약금의 규모는 3백만 원 ~ 2천만 원에 달한다.

## 〈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행위 〉

### 가. 행위사실

- 비에스비푸드는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자필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를 제공하였다.

## 나.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법령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일정 사항을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기재한 서면을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정위는 비에스비푸드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2

###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법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5호, 제7조 제3항
- (조치내용)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통지 명령, 가맹계약 조항 삭제 또는 수정 명령), 과징금 납부명령(1억 9천 7백만 원)

## 3

### 의의 ·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가맹점사업자가 배달 플랫폼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임을 입증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근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할 때 원인이 되는 계약위반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고려없이 위약금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면 위반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주)비에스비푸드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

## 참고

## [주]비에스비푸드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

### 1. 가맹본부 일반현황

#### □ 가맹사업 현황

| 설립일         | 가맹사업 현황 |              |    |           |
|-------------|---------|--------------|----|-----------|
|             | 영업표지    | 가맹사업 개시일*    | 업종 | 직영점/가맹점 수 |
| 2020. 7. 6. | 청년피자    | 2018. 3. 29. | 피자 | / 312     |

\* (주)비에스비푸드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뒤, (주)비에스비푸드에 가맹본부를 양도함

※ 출처 : (주)비에스비푸드의 정보공개서(2024. 12. 31. 기준)

#### □ 매출액 등 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2 | 11,876 | 6,578  | 14,331 | 3,971 | 3,676 |
| 2023 | 18,404 | 10,895 | 19,007 | 3,680 | 2,211 |
| 2024 | 29,833 | 23,020 | 32,886 | 1,650 | 1,022 |

\* 출처 : (주)비에스비푸드의 정보공개서(2024. 12. 31. 기준)

### 2. 관련 법 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 1)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 라.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